

##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

### 1. 일반현황

|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① 업체명            |  | 대 표 자      |                    | ② 등록분야 |        |
| ③ 용역명            |  | 과업기간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
| 관리주체명            |  | 대 표 자      |                    | 전화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구분     | 공공·민간  |
| ④ 준공금액<br>(설계금액) |  | 천원<br>(천원) | ⑤ 공동수급<br>(비율, 방식) |        | ⑥ 계약방법 |

### 2. 참여업체 현황

|       |       |    |      |         |      |
|-------|-------|----|------|---------|------|
| 업체명   | 대 표 자 | 주소 | 등록분야 | 도급비율(%) | 도급액  |
| 대표    |       |    |      |         | (천원) |
| 공동(1) |       |    |      |         | (천원) |
| 공동(2) |       |    |      |         | (천원) |

### 3. 시설물의 현황

|  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⑦ 시설물명 | ⑧ 시설물구분   | ⑨ 종류 | ⑩ 종별           | ⑪ 준공일 | ⑫ 종전 안전등급 |
|        | ⑬ 시설물의 위치 |      | ⑭ 시설물의 형식 및 규모 |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

### 4. 점검·진단 실적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
| ⑮ 점검등의 종류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⑯ 수행분야       |         |
| ⑰ 점검·진단 준공금액<br>(점검·진단 설계금액) |         | (천원)<br>(천원) | ⑱ 안전등급  |
| ⑲ 중대한 결함 등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
| 주요 점검진단 결과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
| 주요 보수·보강(안)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
| ⑳ 내진성능평가                     | 대상여부    | 대가반영여부       | 이전 평가여부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 평가결과 |              |         |

### 5. 성능평가 실적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
| ㉑ 성능평가 준공금액<br>(성능평가 설계금액) |       | (천원)<br>(천원) | ⑯ 수행분야 |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| 종합 성능 | 안전 성능        | 내구 성능  |
| 등 급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|
| 주요평가 결과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|

※ 점검·진단 또는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작성 첨부

## 6. 책임(참여)기술자 현황

| ㉒구분            | 성명 | 생년월일 | ㉓ 과업참여기간    | ㉔ 직무분야<br>등급 | ㉕ 직무<br>(참여) 분야 | ㉖소속 |
|----------------|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
| 책임             |    |      | . . . ~ . .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
| 참여             |    |      | . . . ~ . .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|    |      | . . . ~ . .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|    |      | . . . ~ . .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|    |      | . . . ~ . .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|    |      | . . . ~ . .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|    |      | . . . ~ . .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|    |      | . . . ~ . .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|    |      | . . . ~ . .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|    |      | . . . ~ . .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|    |      | . . . ~ . .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|    |      | . . . ~ . .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|    |      | . . . ~ . .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|    |      | . . . ~ . .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|    |      | . . . ~ . .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|    |      | . . . ~ . .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|    |      | . . . ~ . .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|    |      | . . . ~ . .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|    |      | . . . ~ . .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|    |      | . . . ~ . .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
| ※ 필요시 별지 작성 첨부 |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

## 6. 기술심의(자문)

| ㉗ 기술심의(자문)<br>실시 여부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첨부자료                | 1.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<br>또는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<br>2. 기술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<br>3. 기술심의(자문) 증빙자료(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|
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관리주체 확인자: (서명 또는 인)

안전진단전문기관 · 안전점검전문기관 대표자: (서명 또는 인)

국토안전관리원 귀하

## 작성방법

- ①의 "업체명"란에는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법인명을 적습니다. 자체수행의 경우는 제외합니다.
- ②의 "등록분야"란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도로 및 터널, 수리시설, 항만, 건축, 종합 중 1개를 선택하여 작성하고, 안전점검전문기관의 경우에는 토목, 건축 중 1개를 선택하여 적습니다.
- ③의 "용역명"란에는 용역(계약)명을 적습니다.
- ④의 "준공금액"란에는 용역준공 총금액을 천원 단위로 적고, "설계금액"란에는 발주금액을 적습니다.
- ⑤의 "공동수급"란에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"출자비율(%)"을 적고,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"분담"으로 적고 ⑦의 "시설물명"란에 분담시설물에 대하여만 적습니다.
- ⑥의 "계약방법"란에는 일반경쟁·제한경쟁·수의 또는 기타로 구분 적습니다.
- ⑦의 "시설물명"란에는 해당 시설물의 시설물 관리대장상의 시설물명과 일치하도록 적고, 시설물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고유명칭을 적습니다.
- ⑧의 "시설물구분"란에는 다음 시설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.  
교량·터널·항만·댐·건축물·하천·상하수도·옹벽·절토사면·공동구
- ⑨의 "종류"란에는 다음 시설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.  
도로교량·도로터널·지하차도·복개구조물·고속철도교량·고속철도터널·도시철도교량·도시철도고가교·도시철도터널·일반철도교량·일반철도터널·보도육교·감문시설·계류시설·방파제·파제제·호안·다목적댐·발전용댐·홍수전용댐·용수전용댐·지방상수도전용댐·공동주택(아파트/연립주택/기숙사)·공동주택외건축물·문화 및 집회시설·종교시설·판매시설·운수시설·의료시설·노유자시설·수련시설·운동시설·숙박시설·관광휴게시설·여객자동차터미널·고속철도역시설·도시철도역시설·일반철도역사·광역철도역시설·공항청사·항만여객터미널·관람장·위락시설·공업무시설·지하도상가·하구둑·방조제·수문 및 통문·제방 및 부속시설·다기능보·배수펌프장·광역상수도·공업용수도·지방상수도·공공하수처리시설·옹벽·절토사면·공동구·기타
- ⑩의 "종별"란에는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라 시설물이 제1종 시설물인 경우에는 "1"로, 제2종시설물인 경우에는 "2"로, 같은 영 별표 1의2에 따라 제3종시설물인 경우에는 "3"으로, 그 외 시설물인 경우 "기타"로 적습니다.
- ⑪의 "준공일"란에는 시설물의 준공(사용승인)연월일(0000-00-00)을 적습니다.
- ⑫의 "중전 안전등급"란에는 해당용역 전에 실시한 점검등에 의한 안전등급을 적습니다.
- ⑬의 "시설물의 위치"란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재지를 번지까지 정확히 적습니다.
- ⑭의 "시설물의 형식 및 규모"란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적습니다.

| 구 분                 | 형 식 | 규 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교 량                 | ( ) | 연장( )m, 최대경간장( )m, 차로수( )           |
| 복 개 구 조 물           | ( ) | 연장( )m, 가로( )m, 세로( )m,             |
| 터 널                 | ( ) | 연장( )m, 차로수( )                      |
| 지 하 차 도             | ( ) | 연장( )m, 차로수( )                      |
| 감 문 시 설             | ( ) | 최대통과선박톤수( )톤                        |
| 방 파 제 · 파 제 제 · 호 안 | ( ) | 연장( )m, 높이( )m                      |
| 계 류 시 설             | ( ) | 최대계류선박규모( )톤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댐                   | ( ) | 저수용량( )천만 <sup>m</sup>              |
| 건 축 물               | ( ) | 지하( )층, 지상( )층, 연면적( ) <sup>m</sup> |
| 지 하 도 상 가           | ( ) | 지하( )층, 연면적( ) <sup>m</sup>         |
| 하 구 둑               | ( ) | 연장( )m, 높이( )m                      |
| 수 문 및 통 문           | ( ) | 가로( )m, 세로( )m, 문짝수( )              |
| 제 방                 | ( ) | 연장( )m, 높이( )m                      |
| 다 기 능 보             | ( ) | 연장( )m, 높이( )m                      |
| 배 수 펌 프 장           | ( ) | 총 펌프용량( ) <sup>m</sup> /분           |
| 상 수 도               | ( ) | 공급능력( )만 <sup>m</sup> /일            |
| 공 공 하 수 처 리 시 설     | ( ) | 최대처리용량( ) <sup>m</sup> /일           |
| 옹 벽                 | ( ) | 최대높이( )m, 연장( )m                    |
| 절 토 사 면             | ( ) | 최대연직높이( )m, 단일수평연장( )m              |
| 공 동 구               | ( ) | 연장( )m, 런수( )런, 폭( )m               |

- 
15. ⑮의 "점검등의 종류"란에는 정기안전점검인 경우에는 "정기", 긴급안전점검인 경우에는 "긴급", 정밀안전점검인 경우에는 "정밀", 정밀안전진단인 경우에는 "진단", 그 외에는 "기타"로 적습니다.
  16. ⑯의 "수행분야"란에는 1)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등록분야 중 해당 시설물을 안전 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수행한 분야를 적되 정기안전점검,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도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별표 9를 고려하여 수행분야와 일치하는 교량 및 터널, 수리시설, 항만, 건축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적습니다.  
2) 옹벽 및 절토사면의 경우는 교량 및 터널, 수리시설, 항만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적습니다.
  17. ⑰의 "점검·진단 준공금액"란에는 해당 시설물별 점검·진단 용역의 준공 총금액을 천원단위로 적고, "점검·진단 설계금액"란에는 발주금액을 적습니다.
  18. ⑱의 "안전등급"란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(A, B, C, D, E)을 구분하여 적습니다.
  19. ⑲의 "중대한 결함 등"란에는 중대한 결함 등의 종류, 해당 부재 등(위치) 및 해당부재의 보수·보강(안)을 적습니다.
  20. ⑳의 "내진성능평가"란에는 내진성능평가 부위 또는 부재, 평가결과(내진성능 확보·부족), 내진성능 부족 부재 및 확보 방안 등을 적습니다.
  21. ㉑의 "성능평가 준공금액"란에는 시설물별 성능평가 용역 준공 총금액을 천원 단위로 적고, "성능평가 설계금액"란에는 발주금액을 적습니다.
  22. ㉒의 "구분"란에는 기술자의 참여형태를 구분하여 책임기술자, 참여기술자를 구분하여 적습니다.
  23. ㉓의 "과업참여기간"은 기술자가 참여한 기간으로 과업 배치일과 해제일을 정확히 적습니다.
  24. ㉔의 "직무분야등급"란에는 용역에 참여할 당시의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적습니다.
  25. ㉕의 "직무(참여)분야"란에는 별표 6 또는 별표 8의 직무분야를 적고, ( )안의 실제 참여한 분야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경우에는 교량 및 터널, 수리시설, 항만 또는 건축 중 1개를, 안전점검전문기관의 경우에는 토목 또는 건축 중 1개를 선택하여 적습니다. 위 내용은 참여경력 산정에 활용됩니다.  
ex) 토목(교량 및 터널), 토목(수리시설), 안전관리(건축), 안전관리(수리시설), ……
  26. ㉖의 "소속"란에는 기술자가 소속된 업체의 명을 적습니다.
  27. ㉗의 "기술심의(자문) 실시 여부"란에는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실시된 기술심의(자문) 실시 여부를 적고,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  28. 관리주체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소속된 기술자가 정기안전점검,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위 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